

보도시점 2026. 6. 16.(화) 10:00 / 배포 2026. 6. 16.(화) 08:30

##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의견청취절차 참여 근거 신설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심의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에서부터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이 심의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음으로, 신고인도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인데, 여기에 신고인도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밖에도, 부당 표시·광고 신고 서식에 타 부처에의 신고 여부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중복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부처 간 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정위 직제 개편 및 상위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관 정의 규정 등 조문도 현행화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에 대한 정보제공이 확대\*되고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까지 보장됨으로써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 현행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사건심사 착수 사실, 조사진행 상황, 심의 개최일, 사건처리 결과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까지 통지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7월 7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우: 30108)

\* 팩스: 044-200-4173

\* 전자우편: tnetenna@korea.kr

**<붙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	책임자	과 장	권혜정 (044-200-4121)
		담당자	사무관	박민정 (044-200-4123)







현행	개정안
<p>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한 의안으로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lt;후단 신설&gt;</p>	<p>----- ----- ----- --- (신고인 등은 심사관에게 의견청취 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 및 제30조 내지 제32조의 “심사관”은 신고인 등을 포함한다)</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1조(심사관의 전결 등) ① (생략)</p> <p>② 심사관은 제59조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1조(심사관의 전결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3. (생략)</p> <p>4. 할부거래법 제53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p>	<p>1. ~ 3. (현행과 같음)</p> <p>4. 할부거래법 제5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1호 및 제12호</p>
<p>&lt;신설&gt;</p>	<p>5. 방문판매법 제66조제1항</p>
<p>&lt;신설&gt;</p>	<p>6. 전자상거래법 제45조제2항</p>
<p>5. 하도급법 제30조의2제1항, 제2항</p>	<p>7. 하도급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p>
<p>6. 가맹사업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4항</p>	<p>8. 가맹사업법 제4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p>
<p>7.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제1항 내지 제2항</p>	<p>9.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p>
<p>8. (생략)</p>	<p>10. (현행 8.과 같음)</p>
<p>③ ~ ⑩ (생략)</p>	<p>③ ~ ⑩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별지 제11호 서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p> <p>※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1670-0007) 또는 하도급조사과(☎044-200-45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별지 제11호 서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p> <p>※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1670-0007) 또는 하도급조사과(☎044-200-5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별지 제12호 서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p> <p>※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1670-0007) 또는 가맹거래조사팀(☎044-200-4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별지 제12호 서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p> <p>※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1670-0007) 또는 가맹거래조사과(☎044-200-51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별지 제13호 서식]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p> <p>※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1670-0007) 또는 유통대리점조사과(☎044-200-4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별지 제13호 서식]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p> <p>※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1670-0007) 또는 유통거래조사과(☎044-200-51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별지 제14호 서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p> <p>※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1670-0007) 또는 유통대리점조사과(☎044-200-4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별지 제14호 서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p> <p>※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1670-0007) 또는 대리점거래조사과(☎044-200-5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